



제 1166호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685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소래샛길 소 2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고 제2014- 698호 구유재산 매각공고 3
- 공고 제2014- 712호 공인 신조 공고 6
- 공고 제2014- 7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8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4- 7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입법예고 24
- 공고 제2014- 725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8
- 공고 제2014- 726호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매각 입찰 공고(3차) 29
- 공고 제2014- 730호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4
요령 공고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9
공고 제2014- 28호 예정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4- 57호 도로명주소 고시 40
- 고시 제2014- 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촌정주어항(남동항) 지정 43
고시
- 고시 제2014- 59호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45
경정예산 고시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685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4. 4 ~ 2014. 4. 19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배*숙	서울 은평구 녹번동 100-3*	14442-0295-7468	반송	수취인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698호

구 유 재 산 매 각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현황		예정가격(원)	비 고
		지목	면적(m ²)		
1	남동구 만수동 1118-2	대	1,405.3	4,920,882,300	

- 공고기간 : 2014. 4. 8. ~ 2014. 4.14.
- 입찰기간 : 2014. 4.15.(10:00) ~ 2014. 4.17.(16:00)
- 개찰일시 : 2014. 4.18.(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부터 15일내

2. 입찰참여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독)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내에 온비드(www.onbid.c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계약대금납부 등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은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봅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시 매 6개월마다 2년간 균등분할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하여 분납이자(년 6%)를 부과합니다.

-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12%~15%)를 징수합니다.
- 잔금을 납부 약정일부터 18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지분전매가 금지됩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서 매매대금 완납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공동입찰자 포함)는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지구단위계획(토지 활용계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12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정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4. 4. 9
- 신조공인 : 신조(8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 역지원사업특별회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 역지원사업특별회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에 맞게 압류재산의 신속한 재공매를 위하여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을 규정 정비(안 제63조)
-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교부금전에 대한 구 금고 예탁 규정에 맞게 제목 수정 : 공탁 →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78조)
-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법령 및 운영상 미비점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32조, 제64조, 제71조, 제72조, 제79조, 제85조, 제95조, 제9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전화 : 453-2360 FAX : 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을 각각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3항 중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를 “세외수입으로”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7조의 제목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시장”로,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중 104009란 다음에 104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011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	
--------	-----------	-----	--

별지 제46호 서식 및 제5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세 회계과목 코드 (제12조 관련)

표준세목코드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3000	면허세		
103001	면허세(일반)	면허세	
103002	면허세(차량)		
104000	주민세		
104009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104011	주민세(종업원분)		
105000	재산세		
105001	(2011이전)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002	(2011이전)재산세(선박)		
105003	(2011이전)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004	(2011이전)재산세(토지)		
105005	(2011이전)재산세(주택)		
105099	(2011이전)재산세(기타)		
105301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1세목코드 추가
105302	재산세(선박)		
105303	재산세(항공기)		
105304	재산세(토지)		
105305	재산세(주택)		
105399	재산세(기타)		
111000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14000	등록면허세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11세목코드 추가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132001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132002	사업소세(종업원할)		
140000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별지 제46호 서식

(앞 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호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압류재산 표시

관리 번호	재산의 명칭	소재지	용도 (품질)	종별	수량	매각 예정가격	기타

2. 일괄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공매회차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매각일시	공고기간
1			
2			
3			
4			
5			
6			

3. 공매장소 :

4. 입찰 결과발표 :

5. 공매 입찰 방법 :

210mm×297mm(일반용지 80g/㎡)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다음 사항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 ② 최고액 입찰자는 입찰결과 발표 3일 이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③ 입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입찰하여 최고액 입찰자로 선정될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④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같은 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에 따른** 매수 제한자가 아닐 것
- ⑤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일 것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최고가 입찰자선정(단독입찰 가능)

7. 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 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매수대금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②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액 2,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낙찰가액 2,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입찰보증금을 구청에 귀속 조치 함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10. 공매의 중지

-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해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임
- ②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함
- ③ 매각물건중 농지(전·답·과수원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
- ④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사전에 직접 조사
- ⑤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름
- ⑥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시, 구·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9호 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광업권이전등록 촉탁

아래와 같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 록 원 인 과 그 일 자	년 월 일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록	광업권이전
등 록 권리자 주소 성명	
등 록 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각 1통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 9. (생략) 10. 직인: 법·지방세관계법·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u>사무관리규정</u>」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생략)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u>구청장</u>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u>개인정보보호법</u>」 제3조 - - - - - ----- 5. ~ 9. (현행과 같음) 10.----- - - - -----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 ----- 11. (현행과 같음)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u> (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 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 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생략)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u>인감증명</u>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u>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u>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 ----- ----- ----- -----채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u>인감증명</u>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생략) 제78조(<u>공탁</u>) (생략)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u>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 ② (생략) ③ 채납처분비는 <u>세외수입</u>으로서 그 <u>밖에 경상수입</u>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u> - - - - - ----- -----. 6. (현행과 같음) 제78조(<u>교부금전의 예탁</u>) (현행과 같음)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u>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세 외 수 입 으 로</u>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u>지방세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7조(시장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장</u>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 ----- ----- <u>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u> ----- -----.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u>인천광역시시장</u> 의견조회) ①--- ----- ----- -----<u>인천광역시시장</u>(이하 “<u>시장</u>”이라 <u>다</u>)-----한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타법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5호, 전부개정으로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 ③ (생략)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 ② (생략)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8.2.] [법률 제11245호, 2012.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생략)

□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제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제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전문개정 2011.4.4]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채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채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채납자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4.4]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일부개정]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2014.1.1.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0조, 제20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
(안 제4장,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로 전환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별지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전화 : 453-2360 FAX : 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를 “법 제38조의2”로, “제18호 서식”을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로 하고, 제17조 앞에 “제1절 주민세(재산분)”을 삽입하고, 제17조제1항 중 “이 장에서”를 “이 절에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앞에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소득세”를 각각 “주민세”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법 제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각각 “주민세 종업원분”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 중 “지방소득세”를 각각 “주민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제2절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25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4. 10.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3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4년 2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4. 4. 10. ~ 2014. 4. 25.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26호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매각 입찰 공고(3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 공유일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일반재산(집합건물) 매각 입찰 공고(3차)

나.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집합 건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 5,201동 903호(만수동, 이삭아파트)	대지	119.245 (43평형)	257,581,35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최초 매각예정가격
(286,201,500원)의 100분의 10을 감액한 금액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입찰기간		개찰집행		비고
시작	마감	일시	장소	
2014.4.11(금) [10:00]	2014. 4. 21(월) [16:00]	2014. 4. 22(화) [1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마친 자

4. 현장설명 안내

-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별도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현황 상태로 매각 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전자입찰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합니다.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환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 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8.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한 가격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onbid.co.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찰결과-공공기관입찰결과 또는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금액납부가 입찰금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라.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인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11. 매각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금 :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

나.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우리구가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전액 납부

다.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재산활용에 관한 제반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반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 - 연기공고 - 취소 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마.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반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본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지장물 등의 제거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법시행령 포함)」에 의합니다.

13. 기타 문의처

가.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기타 매각재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032-453-227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730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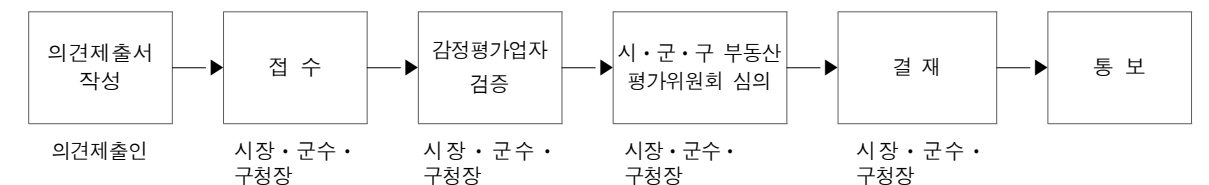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4.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4 - 2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04. 2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04. 09. ~ 2014. 04. 18.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논고-254	맛있는고기해물 샐러드부페	김*원	논현역로 8 (논현동, 아이엠프라자)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11.04	2014.04.2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04. 18.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4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5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32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82-20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랑(3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랑(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4.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8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3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3-1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13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14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0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1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8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9	2014.04.0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32	2009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84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0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83번길 3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6-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5-9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0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0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69 번길 5-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9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15-17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04.0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54 번길 15-1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17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58호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촌정주어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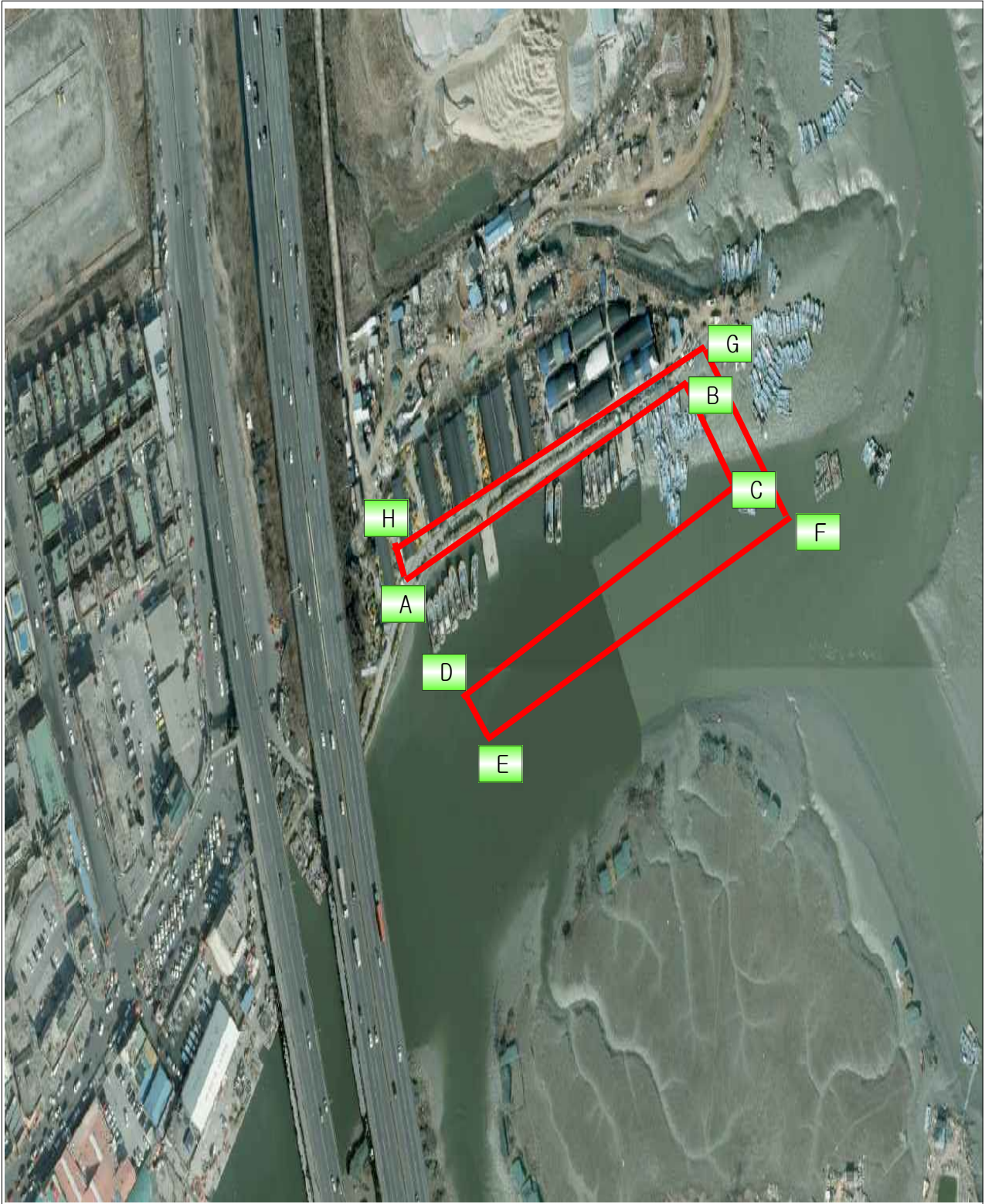
2014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어 항 명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항계)	어항면적 (㎡)
남 동 항	어촌정주어항	남동구 논현동	지점 A, B, C, D, E, F, G, H, A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7,850
			· A : 논현동 66-52번지 상단 좌측 경계선으로부터 50m인 지점 (N 37°24'2", E 126°44'31")	
			· B : 지점 A에서 동쪽방향 직선 190m 이동한 지점 (N 37°24'4", E 126°44'38")	
			· C : 지점 D에서 동쪽방향 직선 190m 이동한 지점 (N 37°24'3", E 126°44'38")	
			· D : 지점 A에서 남쪽방향 직선 45m 이동한 지점 (N 37°24'1", E 126°44'31")	
			· E : 지점 D에서 남쪽방향 직선 20m 이동한 지점 (N 37°24'0", E 126°44'32")	
			· F : 지점 E에서 동쪽방향 직선 200m 이동한 지점 (N 37°24'3", E 126°44'39")	
			· G : 지점 H에서 동쪽방향 직선 200m 이동한 지점 (N 37°24'5", E 126°44'37")	
			· H : 지점 A에서 북쪽방향 직선 17m 이동한 지점 (N 37°24'3", E 126°44'31")	

※ 어항구역도 별첨

【별첨】 남동항 어항구역도(안)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59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고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4. 10)에서 의결, 확정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14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27,264,552	100.00%	509,732,775	100.00%	17,531,777	3.44%
일반회계			487,843,644	92.52%	470,311,867	92.27%	17,531,777	3.73%
특별회계			39,420,908	7.48%	39,420,908	7.73%	0	0.00%
	기타특별회계		39,420,908	7.48%	39,420,908	7.73%	0	0.00%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492,674	1.99%	10,492,674	2.06%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4,259	0.14%	714,259	0.14%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430	0.00%	16,430	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912,277	1.88%	9,912,277	1.94%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4,963	0.03%	154,963	0.03%	0	0.00%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04,968	0.23%	1,204,968	0.24%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60,977	0.01%	60,977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6,864,360	3.20%	16,864,360	3.31%	0	0.00

2. 일반회계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 성 비		기 정 액	구 성 비		비 교 증 감	증 감 륜
총 계		527,264,552	100.00 %		509,732,775	100.00 %		17,531,777	3.44%
100	지방세수입	101,475,825	19.25 %		101,482,516	19.91 %		△6,691	△0.01%
110	지방세	101,475,825	19.25 %		101,482,516	19.91 %		△6,691	△0.01%
200	세외수입	43,380,579	8.23 %		43,297,849	8.49 %		82,730	0.19%
210	경상적세외수입	29,081,292	5.52 %		29,026,049	5.69 %		55,243	0.19%
220	임시적세외수입	14,299,287	2.71 %		14,271,800	2.80 %		27,487	0.19%
300	지방교부세	5,000,000	0.95 %		3,000,000	0.59 %		2,000,000	66.67%
310	지방교부세	5,000,000	0.95 %		3,000,000	0.59 %		2,000,000	66.67%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7,899,384	9.08 %		37,000,000	7.26 %		10,899,384	29.46%
410	조정교부금	47,899,384	9.08 %		37,000,000	7.26 %		10,899,384	29.46%
500	보조금	271,359,993	51.47 %		266,803,639	52.34 %		4,556,354	1.71%
510	국고보조금등	179,999,320	34.14 %		174,034,682	34.14 %		5,964,638	3.43%
520	시·도비보조금등	91,360,673	17.33 %		92,768,957	18.20 %		△1,408,284	△1.5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148,771	11.03 %		58,148,771	11.41 %		0	0.00%
710	보전수입등	58,102,661	11.02 %		58,102,661	11.40 %		0	0.00%
720	내부거래	46,110	0.01 %		46,110	0.01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전년도예산액	구 성 비	비교증감	증 감 륜
총 계		487,843,644	100.00%	470,311,867	100.00 %	17,531,777	3.73%
100	인건비	60,917,081	12.49%	60,077,841	12.77 %	839,240	1.40%
200	물건비	25,324,566	5.19%	24,961,339	5.31 %	363,227	1.46%
300	경상이전	327,086,767	67.05%	324,319,500	68.96 %	2,767,267	0.85%
400	자본지출	59,301,934	12.16%	51,723,014	11.00 %	7,578,920	14.65%
600	보전재원	250,000	0.05%	250,000	0.05 %	0	0.00%
700	내부거래	1,204,871	0.25%	1,204,871	0.26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3,758,425	2.82%	7,775,302	1.65 %	5,983,123	76.95%

세 출 총 괄 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7,843,644	100.00 %	470,311,867	100.00 %	17,531,777	3.73 %
010	일반공공행정	33,006,573	6.77 %	32,417,507	6.89 %	589,066	1.82 %
020	공공질서및안전	2,518,661	0.52 %	1,918,661	0.41 %	600,000	31.27 %
050	교육	11,239,454	2.30 %	11,209,973	2.38 %	29,481	0.26 %
060	문화및관광	14,317,196	2.93 %	12,829,742	2.73 %	1,487,454	11.59 %
070	환경보호	19,727,774	4.04 %	19,301,063	4.10 %	426,711	2.21 %
080	사회복지	272,993,249	55.96 %	271,489,951	57.73 %	1,503,298	0.55 %
090	보건	12,825,201	2.63 %	11,316,916	2.41 %	1,508,285	13.33 %
100	농림해양수산	4,088,819	0.84 %	3,767,226	0.80 %	321,593	8.54 %
110	산업·중소기업	5,240,129	1.07 %	4,640,129	0.99 %	600,000	12.93 %
120	수송및교통	12,268,946	2.51 %	10,711,980	2.28 %	1,556,966	14.53 %
140	국토및지역개발	16,939,829	3.47 %	14,852,526	3.16 %	2,087,303	14.05 %
160	예비비	10,758,425	2.21 %	4,775,302	1.02 %	5,983,123	125.29 %
900	기타	71,919,388	14.74 %	71,080,891	15.11 %	838,497	1.18 %

세 입 총 괄 표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39,420,908	100.00 %	39,420,908	100.00 %	0	0.00%	
200	세외수입		6,647,858	16.86 %	6,647,858	16.86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235,858	8.21 %	3,235,858	8.21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412,000	8.66 %	3,412,000	8.66 %	0	0.00%	
500	보조금		2,662,205	6.75 %	2,662,205	6.75 %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24,562	1.33 %	524,562	1.33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2,137,643	5.42 %	2,137,643	5.42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10,845	76.38 %	30,110,845	76.38 %	0	0.00%	
	710	보전수입등	30,102,661	76.36 %	30,102,661	76.36 %	0	0.00%	
	720	내부거래	8,184	0.02 %	8,184	0.02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9,420,908	100.00%	39,420,908	100.00 %	0	0.00%
100	인건비	1,121,577	2.85%	1,121,577	2.85 %	0	0.00%
200	물건비	905,792	2.30%	884,132	2.24 %	21,660	0.00%
300	경상이전	1,548,841	3.93%	1,548,841	3.93 %	0	0.00%
400	자본지출	15,273,647	38.75%	14,023,957	35.57 %	1,249,690	0.00%
700	내부거래	37,926	0.10%	37,926	0.10 %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0,533,125	52.09%	21,804,475	55.31 %	△1,271,350	0.00%

세 출 총 괄 표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전년도예산액	구 성 비	비교증감	증 감 률
총 계		39,420,908	100.00 %	39,420,908	100.00 %	0	0.00 %
070	환경보호	9,912,277	25.14 %	9,912,277	25.14 %	0	0.00 %
080	사회복지	615,035	1.56 %	615,035	1.56 %	0	0.00 %
120	수송및교통	16,261,591	41.25 %	16,261,591	41.25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11,930,012	30.26 %	11,930,012	30.26 %	0	0.00 %
900	기타	701,993	1.78 %	701,993	1.78 %	0	0.00 %